풀빵공제1호-기본공제 : 재해사망 위로금 신청서

노동공제연합 사)풀빵의 기본공제 약관에 따라
불의의 사고(재해)로 회원의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

- **위로금 지급 내용 : 300만원**
- **제출서류 : 사망진단서, 유족 확인 증빙서류**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, 신분증사본)

☐ **소속 단위 :** ☐ **회원 성명 :**

☐ **사망 일시 :** ☐ **사망 사유 :**

☐ **위로금 수령인 정보**

성 명 :	연 락 처 :	회원과의 관계 :
금융기관 :	계좌번호 :	예 금 주 :

신청일 : 2023년 월 일

유족 성명 : (서명/날인)

소속단위 담당자 : (서명/날인)

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귀중

유족에 대한 사망위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법에 따라 상속권 한을 갖는 유족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<상속순위>

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, 피상속인의 **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**이 되며, **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**이 됩니다(「민법」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).

순위	상속인	비고
1	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 등)	항상 상속인이 됨
2	직계존속(부・모, 조부모 등)	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
3	피상속인의 형제자매	1,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
4	4촌 이내의 방계혈족(삼촌, 고모, 이모 등)	1, 2,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

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, 상속자 중 1인이 위로금 전액을 수령함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받아 (인감증명서 필) 선정자에게 지급